홍성군 고시 제 2016-45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 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제 정 2013 년 03 월 14 일(홍성군 고시 제2013-45호) 일부개정 2016 년 02 월 29 일(홍성군 고시 제2016-45호)

홍 성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고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자(이하 "낚시어선업자"라 한다) 및 그 어선과 낚시어선의 승객에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이하 "낚시어선" 이라한다)의 영업시간은 기상관측소 기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한다. 단,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야간항해 가능으로 검사된 낚시어선은 출입항 기준으로 하절기(4월 1일~10월 31일) 04:00~20:00 까지, 동절기(11월 1일~익년 3월 31일) 05:00~19:00 까지로 하며, 다른법령에 항해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4조(운항회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횟수 1일 2회로 한다. 2회차 승객수는 1회차 2회차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영업구역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 및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법진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 2. 낚시어선 영업행위 금지구역 및 간출암
- 3. 충청남도 해상을 벗어난 구역
- 4. 서해특정 해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선상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승객(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장소에 안내 하여 낚시어선 업 영업을 할 경우에는 낚시어선은 승객(낚시승객)안내 장소 주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단, 낚시어선 승객의 승선·하선을 위하여 운항(항해)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제6조 (안전운항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과 안전의무를 준수할 것
- 2. 정원초과승선 금지 및 낚시어선 승선정원 및 승객준수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에 승선원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킬 것
- 3.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선주·선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
- 4.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조치를 요청할 것
- 5. 다른 시·군 관할수역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령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 6.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지 않아야 하며, 승객들이 생산한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와 휴지통을 선내에 비치할 것
- 7. 강풍, 풍랑, 해일, 태풍주위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해상에 서도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밖의 출입항신고 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의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을 하지 말 것
- 8. 음주상태 및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됨

- 9.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10.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2.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3.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
 - 4.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금지기간·체장· 체중 미만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5.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 낚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6.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7.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안전운항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8.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고발생의 보고)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및 충돌·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 및 인접시장·군수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 전 종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한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2008-83호, 2013-45호)는 폐지합니다.